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4.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④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2. 하수도·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유지관리
3.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4. 배수펌프장 및 배기시설의 관리
5.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4.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5.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제11조(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3. 2.  
총무재무 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5. 3. 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규정을 구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본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구 본청 : 905명
  - 직속기관(보건소) : 71명
  - 동 : 487명
-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종전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이 '94. 3. 16자로 개정된 지방자

치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 12. 31 공포되고 '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마포구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안 번호	383
----------	-----

제출일시 : 1995. 2.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규정을 구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본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제정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구 본청 : 905명
- 직속기관(보전소) : 71명
- 동 : 487명

○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3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 제15조,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 제21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함)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마포구의 본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구 본청(구청) : 905명
- 2. 직속기관(보전소) : 71명
- 3. 동 : 487명

제2조(직급별정원의 규정) 마포구의 본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2.

총무재무 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5. 3. 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1994. 3. 16. 법률 제4741호) 동법 제109조제2항에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모자복지법령등에 근거하여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며,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통합공과금운영제도의 폐지로 공과금요원의 임용자격

란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동장에 한하여 임기만료일까지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조 제2항)
- 부녀상담원 및 가정상담원을 부녀복지상담원 및 가정복지상담원으로 하고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25세이상 55세미만에서 25세이상 40세미만으로 함(안 제4조제4항, 별표1, 제2호)
-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중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를 신설(별표1, 제2호)
-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의 부녀·가정복지상담원 임용자격요건 강화(별표1, 제2호)
- 불합리한 자격기준 및 부녀복지상담원 9급상당 임용자격 삭제(안 별표 1, 제2호)
  - 부녀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교사 자격자 삭제
  - 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 삭제
- 통합공과금운영제도의 폐지로 공과금요원 임용자격란 삭제(안 별표 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6